

제314회 임시회

2012. 9. 11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광진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임

4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도조례 제6조 본문에 규정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일치 (안 제6조)
- 나. 담당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“균형개발과장”에서 “담당부서 과장”으로 개정 (안 제15조제4항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업무주관부서인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, 입법예고(2012. 8. 9 ~ 8. 28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있음으로 정당성이 인정됨.

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